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71
----------	-------

발의연월일 : 2026. 2. 4.

발 의 자 : 김 윤 · 김선민 · 전진숙
이수진 · 김남근 · 윤준병
정태호 · 김우영 · 남인순
이재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투명한 의약품 유통 관리를 위하여 의약품 공급자가 약국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내역을 보고받고 있으며, 약사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약사가 조제하려는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음.

수집·관리되는 의약품 수급 및 재고 보유 관련 정보는 국민이 특정 약국을 방문하기 전에 해당 약국에서의 조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해당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공익적 목적의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의약품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5 및 제94조제1항제6호 신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5(의약품 수급 정보 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정보 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 및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은 「의료법」 제34조의2에 따른 비대면진료 지원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조의3 및 제47조의3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의약품 수급 및 재고의 보유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약품 수급 및 재고의 보유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범위·방법 및 정보 보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의약품 수급 및 재고의 보유 여부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부 칙

이 법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7조의5(의약품 수급 정보 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 및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은 「의료법」 제34조의2에 따른 비대면 진료 지원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조의3 및 제47조의3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의약품 수급 및 재고의 보유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의약품 수급 및 재고의 보유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범위·방법 및 정보 보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제94조(벌칙) ①----- -----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 5의5. (생략) <u><신설></u> 7. ~ 12. (생략) ② (생략)	----- -----. ----- ----- -----. 1. ~ 5의5. (현행과 같음) 6. 제4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u>제공받은 의약품 수급 및 재고의 보유 여부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u> 7.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